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December 31, 2021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거래 소식지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 11.	• (이슈) 대리점법 개정안 •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에서 (i)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ii) 동의를결제도 도입, (iii)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iv)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v)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vi)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vii)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의결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 11.	• (이슈) 방문판매법 개정안 •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에서 법 적용 제외 범위의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 의결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 11. 17.	• (이슈)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 (주요내용) (i)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ii)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며, (iii)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 및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원장, 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국제회의 참석 11. 30.	• (이슈) 디지털 경제 경쟁법 집행 관련 국제 협력 • (주요내용)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디지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 ‘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
2021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12. 2.	• (이슈) 2021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 (주요내용) 공정위는 6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218개(상장사 274개) 회사의 2020. 5. 1. ~ 2021. 4. 30. 기간 중 (i)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ii) 이사회 구성 및 작동 현황, (iii)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을 공개하였고, 특히 (i)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현황, (ii)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 (iii) 이사회 내 ESG위원회의 구성 및 작동 현황 등 새로운 항목도 공개하였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 9.	• (이슈) 하도급법 개정안 •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에서 (i)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ii)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iii)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iv) 동의를결제도 도입, (v)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vi)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방식 도입, (vii)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 (viii)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 9.	• (이슈) 가맹사업법 개정안 •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에서 (i)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사전동의제 도입, (ii)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및 행위 금지, (iii)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iv) 동의를결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의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 9.	•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결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의결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 9.	• (이슈) 방문판매법 개정안 •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결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 의결
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야 분쟁 관련 동향 발표 12. 14.	• (이슈) 약관 관련 분쟁 유형 통계 발표 •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남

이슈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 16.	• (이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1년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에 관한 입장 설명 12. 20.	• (이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 관련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개인 간(C2C)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에 관한 12월 20일자 언론보도에 대하여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하는 설명자료를 발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 21.	• (이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 동향 • (주요내용)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 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 발표 12. 16.	• (이슈)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들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함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2. 22.	• (이슈) 하도급법 고시 개정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2. 23.부터 2022. 1. 22.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힘
제개정된 8개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시행 12. 23.	• (이슈)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제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2. 30. 부터 시행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12. 23.	• (이슈) 사건절차규칙 개정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021. 12. 30.)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2. 30. 부터 시행
과징금고시 개정안 시행 12. 23.	• (이슈)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021. 12. 30.)을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2. 30. 부터 시행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2021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12. 23.	• (이슈)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 (주요내용) 공정위는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II. 주요 소식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 전달 11. 10.	• (이슈)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 • (주요내용) 46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작성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이 국회에 전달되었고, 공정위는 위 자료집을 통해 제도 추진 현황 및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
대법원, 대표가 담합사실 몰랐어도 감시의무 소홀로 배상책임 인정 12. 7.	• (이슈) 담합 손해배상의무 관련 판결 동향 • (주요내용) 대법원은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담합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함
조성욱 공정위원장, 향후 공정거래 정책동향 언급 12. 23.	• (이슈) 향후 공정거래 정책동향 • (주요내용)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i) 대기업 집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런 정보가 ESG 경영 정보가 되도록 할 예정이며, (ii)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 거래 구조를 확립할 예정임을 언급
III. 국회 발의법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종배 의원안) 국회제출 11. 12.	• (이슈)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국토위 이종배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약관규제법 일부개정안(홍성국 의원안) 국회제출 11. 19.	• (이슈) 약관규제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홍성국 의원은 약관규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홍성국 의원안) 국회제출 11. 19.	• (이슈) 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홍성국 의원은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이슈	주요 내용
<u>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홍성국 의원안) 국회제출</u> 11. 29.	• (이슈)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홍성국 의원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용우 의원안) 국회제출</u> 12. 8.	• (이슈)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이용우 의원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홍성국 의원안) 국회제출</u> 12. 9.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홍성국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공정거래 소식지

I. 보도자료

1.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 11.)

- 주요 내용은 (i)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ii) 동의를결제도 도입, (iii)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iv)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v)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vi)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vii)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임
- 개정안은 2022. 6. 8. 부터 시행될 예정임

[주요 개정 내용]

•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제34조 개정)

- (개정 배경)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에 신고,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 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이나, 현행 3배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위반 억지에 한계 있었음
- (개정 내용) 3배소 적용 대상에 보복 조치를 추가

• 동의를결제도* 도입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 (개정 배경) 대리점법에는 동의를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었음
- (개정 내용)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를결제도를 도입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

•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제12조의3 신설)

- (개정 배경) 제재 위주의 사후 규제 방식은 사건처리 소요 기간, 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등의 한계가 있었음
- (개정 내용) 공정위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 기준을 마련하여 공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제5조의2 신설)

- (개정 배경) 현행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공정위의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관행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 (개정 내용) 공급업자·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제21조 개정)

- **(개정 배경)** 현행 규정상으로는 조정절차를 거쳐 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어 있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개시 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는 그 효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합의사항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았음
- **(개정 내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합의사항 이행 시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

2.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 11.)

- 개정안은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제외하여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활성화를 유도(안 제3조 제2호, 2022. 12. 8. 부터 시행)
- 공정위는 동 금융상품이 법개정으로 방판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소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이 보호된다고 설명
- * 보장성 상품은 15일과 30일(보험증권수령일 기준 15일과 청약일 기준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대출성 상품은 14일, 투자성 상품은 7일의 청약철회 기간 보장(금소법 제46조)

3.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 (11. 17.)

-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을 위해 (i)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ii)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며, (iii)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iv)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가 11. 19.부터 시행되었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개정 내용]

•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시행령 제5조의5)

- **(개정 배경)** 종전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활동할 여지가 있었음
- **(개정 내용)**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i)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ii)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외도 함께 규정

*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시행령 별표 1, 고시 별지서식)

- ① 해당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② 해당 가맹본부의 판매 상품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
- ①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② 평균 운영기간, ③ 연간 평균 매출액 등 직영점을 통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
-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
- 가맹본부가 이번에 추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보다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예시'를 제시

•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 확대 (가맹사업법 제3조 제2항)

-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가맹본부도 (i)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ii)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iii)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

•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시행령 제35조)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도 지자체장(서울, 인천, 경기, 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다만 이 규정은 2022년 5월부터 시행)

4. 공정위원장, 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국제회의 참석 (11. 30.)

-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 양일 간, 디지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 '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하였고,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정위원장 주요 발언 내용]

• 1세션: 경쟁당국 조직역량 강화방안 관련

- **(공정위 주요 분석대상)** 디지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5개 산업분야(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금융)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밝힘
- **(인력 채용 및 조직 강화)** 급변하는 디지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채용 및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위는 (i) 현재 ICT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서울대·ETRI와 MOU 체결을 하여 외부역량도 활용하고 있고, (ii) 장기적으로 데이터·알고리즘 관련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며, (iii)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하여 직원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포털'을 구축하는 등 업무방식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2세션: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국제적 협력방안 관련

- **(공정위 정책 우선순위와 실적)** 공정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에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 ICT 전담TF 설치를 하여 디지털 사건들을 활발하게 처리하였고, 작년 6월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고 강조
- **(디지털시장 소비자 정책 관련)** 공정위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데이터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힘
- **(국제적 협력방안 제시)**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시장 정보를 전부 파악하기 어려운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의 특성상, 공동의 시장조사 진행과 같은 새로운 협력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
- **(향후 국제적 협력기조)** 공정위는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선진 경쟁당국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서 디지털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5. 2021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12. 2.)

- 공정위는 6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218개(상장사 274개) 회사의 2020. 5. 1. ~ 2021. 4. 30. 기간 중 (i)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ii) 이사회 구성 및 작동 현황, (iii)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을 공개하고, 특히 (i)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재직 현황, (ii)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 (iii) 이사회 내 ESG위원회의 구성 및 작동 현황 등 새로운 항목도 공개
- * 21. 5. 1. 지정된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신규 지정집단 및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집단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 공정위는 사외이사·감사위원·내부 위원회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있으나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제기
- 또한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21. 12. 30.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될 예정이며,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6.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 9.)

- 주요 내용은 (i)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ii)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iii)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 등 공시, (iv) 동의를결제도 도입, (v)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vi)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방식 도입, (vii)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 (viii)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임
-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의 다양화, 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 도입, 동의를결제도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제16조의2 및 제24조의4 개정)

- **(개정 배경)** 원자재비 등 공급원가가 인상되면 하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은 협상력 제고 효과가 미미하였음. 또한,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는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 내용)**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동의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 그리고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

•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3조의5 신설)

- **(개정 배경)** 공공분야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단계에서의 입찰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저가 계약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찰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됨
- **(개정 내용)**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시 유찰사유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13조의3 신설)

- **(개정 배경)**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 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

• 동의를결제도 도입 (제24조의9 내지 제24조의11 신설)

- **(개정 배경)** 종전 하도급법 상 제재방식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에 한계가 있었음
- **(개정 내용)** 동의를결제도를 하도급법에도 도입

•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등 (제24조의5 개정 및 제24조의8 신설)

- **(개정 배경)** 종전 법은 일방의 소제기 시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리한 조정결과가 예상되는 분쟁당사자가 결과통지 전에 소를 제기하는 등 남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개정 내용)**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규정

•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방식 도입 (제3조의2 개정)

- **(개정 배경)** 현재 공정위가 주도하는 하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은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 내용)**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하는 상향식 제·개정 방식을 추가함

-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 (제12조의3 개정)**

- **(개정 배경)** 하도급계약 체결 전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술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유용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이 계약 체결 전 행위도 규율하는지 불명확하였음
- **(개정 내용)** 하도급계약 체결 전의 기술유용행위도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하도급법으로 규율하도록 명시

-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제25조의3 개정)**

- **(개정 배경)** 종전 법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로 자금사정이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음
- **(개정 내용)** (i)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ii)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iii)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하도급법에 직접 규정하였음.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중소기업에 한하여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과징금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규정할 계획

7.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 9.)

- 의결된 개정안은 (i)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사전동의제 도입, (ii)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및 행위 금지, (iii)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iv)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제12조의6 개정)**

- **(개정 배경)** 광고·판촉행사는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음
- **(개정 내용)**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 (제29조의2, 제41조제4항 신설)**

- 종전 법에서는 별다른 규정 없었으나, 개정된 법은 등록증을 대여 받거나 대여해 주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함

-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 신설 (제31조의2제5항 신설)**

- 공정위가 가맹분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결정 이전에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

- **동의의결제도 도입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

8.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 9.)

- 의결된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
-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9.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 9.)

- 의결된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
-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0. 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야 분쟁 관련 동향 발표 (12. 14.)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12월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조정원에 접수된 사업자와 소상공인 고객 간 약관분야 전체 분쟁 1,077건 중 약 56.5%인 609건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남
-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된 사례로, (i) 신청인들의 세부적인 신청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 '계약해지 거부'가 35.0%(213건)로 조사되었으며, (ii) 해지 사유는 단순 변심이 51.6%(314건), 광고 품질 불량이 20.2%(123건) 등이고, (iii) 해지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 2일 이내가 10.9%(66건)으로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 체결 직후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됨

1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 16.)

- 공정위는 2021년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i)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ii)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iii) 대금미지급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금미지급 여부 확인 시 신속한 향후금지명령, 시정조치로 대금조정협의 명령 부과, 유인책을 제공하여 분쟁조정 또는 중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iv) 계약 후 원자재가격 인상 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협의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개발·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12.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에 관한 입장 설명 (12. 20.)

- 공정위는 개인 간(C2C)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에 관한 12월 20일자 언론보도에 대하여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하는 설명자료를 발표하였음
 -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20조)은 C2C전자상거래에 있어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로 하여금 (i) 판매자의 신원정보(성명·전화번호 등)를 확인하고, (ii)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정보 열람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음. 위 개정안은 C2C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i) 개인판매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ii) 판매자-소비자 간 분쟁해결에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입법예고 이후,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시되었고, 현재 국회에는 이를 반영하여 (i) 개인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할 신원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한정하고, (ii) 그 정보가 제공되는 대상의 범위를 분쟁조정기구, 법원, 소비자(개인판매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로 규정한 전부개정안(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 그와 더불어, 위 법안들은 C2C플랫폼에 대하여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는 청약철회권 보장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와, 해당 플랫폼 내의 판매자가 개인판매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있음

1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 21.)

- 지난 12월 21일,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개정사항

- 공시제도 구체화 및 합리화 (안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36조)

(내용) 과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구체화,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

(개정 근거) (i)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등의 현황 정보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ii)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과 거래상대방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개정 내용) (i)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해서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간접출자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되, 동일인의 의식불명 등 면제사유를 규정, (ii) 공익법인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 (iii)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

-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안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출자·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정 배경)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 존재

(개정 내용)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

-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안 제5조 제6항, 제6조 제3항)**

* 동일인의 친족(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해당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정 배경) 현행 시행령은 부당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측 계열회사에 대해 그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측 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만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

(개정 내용) 친족측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ii) 동일관련자 제외요건(친족독립경영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청산 등으로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 그 분리되었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사항**

-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 (안 제27조 등)**

(개정 배경) 현행 벤처지주회사제도는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하는 측면 존재

(개정 내용) (i)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축소, (ii)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 (iii)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iv)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자료제출의무 부과

*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이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이액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벤처기업 및 R&D 규모가 매출액의 5%이상 중소기업

-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30조 등)**

(개정 근거)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개정 내용) (i)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 (ii)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

- **PEF 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안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개정 배경)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

** PEF는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buy-out)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업 지배가 일시적임

(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i) PEF전업집단과 (ii)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안 제19조)**

(개정 근거)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

-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안 제44조 제2항)**

(개정 근거)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

* 정보교환 합의 외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됨

-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안 제51조 제3항)**

(개정 근거)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로 제재조치 감면 등 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감면 취소사유를 (i)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ii)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iii)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iv) 자진 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

• **법 집행체계·절차 관련 개정사항**

-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 10)**

(개정 배경) 개정 공정거래법은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개정 내용) 서면실태조사 관련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하여 규정

* 사업자 범위반시 (1차) 2천만원, (2차) 5천만원, (3차이상) 1억원 부과, 임원 범위반시 (1차) 2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이상) 1천만원 부과

- **진술조서 기재사항 규정 (안 제75조 제2항)**

(개정 배경) 개정 공정거래법은 당사자 진술 청취 시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개정 내용) 진술조서에 진술자의 성명·주소, 진술일시·장소·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

14.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 발표 (12. 21.)

-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2021년 6월)에 지주회사의 일반·재무현황 및 계열회사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27개, 2021년 9월 말 기준)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유구조)**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27개, 이하 '전환집단')에 소속된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로 전년(26.3%, 49.5%)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출자현황)** 전환집단(27개)은 일반집단(32개)보다 출자단계가 적고,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25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96개이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45개
 - **(내부거래)**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15.3%)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일반집단(10.4%)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익구조)**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이 각각 44.6%과 47.9%로, 배당수익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조금 높은 것으로 분석됨

15.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2. 22.)

-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2022. 2. 18. 시행)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2. 23. 부터 2022. 1. 12.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힘
-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i)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산정할 때에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의 법 위반 평가점수를 ‘중(2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하였으며, (ii) 기술유효행위 관련 용어를 하도급법상 용어로 통일(기술자료 유용·유출→기술자료 사용·제공)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변경(법 제12조의3 제3항→제4항)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2022. 2. 18.에 맞추어 과징금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16. 제개정된 8개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시행 (12. 23.)

- 공정위는 경쟁사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정보교환) 규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2. 30. 부터 시행
 - *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안,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개정안, 「사업자단체활동심사지침」 개정안,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
 -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은 (i) 정보교환의 개념, (ii) 정보교환 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관련사례, (iii)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추정 규정 해석방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안은 (i) 합의추정 사유에 정보교환을 추가, (ii) 거래조건 예시 정비, (iii) 담합 유형에 정보교환 합의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개정안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동행위 인가사유를 통합(6개 → 4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인가신청서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개정안은 (i) 경쟁제한 행위유형에 정보교환을 추가하고, (ii)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동행위 인가사유를 통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공동행위 인가사유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은 (i) 조사개시일 규정 삭제*, (ii) 감면신청인 순위 승계규정을 간명화, (iii) 감면혜택을 받은 자가 협조해야 하는 재판의 범위(행정소송)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함
- * 조사개시일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자진신고 사건의 조사개시일을 자진신고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음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을 반영

17.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12. 23.)

- 공정위는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021. 12. 30.)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2. 30. 부터 시행
-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서는 (i)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소액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도입하고(제3절 약식절차), (ii) 국가기관 등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43조 제3항), (iii) 사업자, 참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확대하고(제37조 제1항), (iv) 신고유인을 높이고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신고서식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함

18.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시행 (12. 23.)

- 공정위는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021. 12. 30.)을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2. 30. 부터 시행
-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i)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의 하한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하여 상향하였으며, (ii) 정액 과징금 산정 원칙을 정비하고, (iii)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이익 대비 과징금 규모의 형평성,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 감경 비율을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19. 공정위, 2021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12. 23.)

- 공정위는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음
 -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관련) (i)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ii)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하며,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하고, (iii) 계란 거래가격 투명화를 위하여 계란 공판장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최고가 낙찰)을 도입하며 거래 가격을 공표하도록 함
- * 이행능력(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입찰가격 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 조달청이 물품 종류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2개 이상의 업체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수요 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

- **(경쟁촉진, 고용유도를 위한 과제 관련)** (i)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하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ii)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활동,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 관련)** (i) 대구 등 6개 시·도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ii)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함
- **(혁신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 관련)** (i)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에 우대하도록 하며, (ii) 맨홀 뚜껑 소재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선함
- **(사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관련)** (i)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ii) 자동차 결함 공고, 건설기계 결함 공고, 단지조성사업 공고 등 행정공고 시 공고 가능한 신문사의 범위를 확대함

II. 주요 소식

1.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 전달 (11. 10.)

- 11. 10. 46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작성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이 국회에 전달되었고, 공정위는 위 자료집을 통해 (i)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ii)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마련, (iii)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iv)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v)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제도 추진 현황 및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
- 특히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마련을 위한 향후 과제로 (i) 사건 처리의 신속화를 위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 전결 처리, 약식처리, 위원 단독심리제 도입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ii)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강화를 위해 지역현장 감시역량을 제고하고자 단속 법규 위반 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해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방안, (iii)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갑을관계 사건에서 피심인이 조사·심의 단계에서의 피해구제 여부를 과징금 수준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칭)공정거래분쟁조정기본법' 제정 및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등 분쟁조정의 전문·신속성 제고할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예정이라고 밝힘

2. 대법원, 대표가 담합사실 몰랐어도 감시의무 소홀로 배상책임 인정 (12. 7.)

- 대법원에서 지난 달 기업 담합 행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불법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감시·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담합에 관여한 영업 임직원들은 대표이사인 피고를 비롯하여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어떠한 제지나 견제도 받지 않은바, 이는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표이사인 피고가 가격담합 행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거나 적어도 가격담합의 가능성에 대비한 그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음

3. 조성욱 공정위원장, 향후 공정거래 정책동향 언급 (12. 23.)

-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제3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i)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추구하는 바는 대기업 집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런 정보가 ESG 경영 정보가 되도록 할 예정이고, (ii)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 거래 구조를 확립할 예정임을 언급

III. 국회 발의법안

1.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종배 의원안) 국회제출 (11. 12.)

- 국회 국토위 소속 이종배 의원은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5 신설 등)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2. 약관규제법 일부개정안(홍성국 의원안) 국회제출 (11. 19.)

-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의원은 분쟁당사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조정이 있을 때까지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7조의3 신설)하는 약관규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3.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홍성국 의원안) 국회제출 (11. 19.)

-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의원은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보장하고자 현행법의 금지 대상인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조 제1항 제5호 신설)하는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4.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홍성국 의원안) 국회제출 (11. 29.)

-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의원은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안 제85조의2)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심의 절차 개시 사실을 통지(안 제85조의3)하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5.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용우 의원안) 국회제출 (12. 8.)

-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i)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및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며, (i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등)하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6.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홍성국 의원안) 국회제출 (12. 9.)

-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의원은 자체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선불충전금을 신탁하고 소비자에게 그 신탁 및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위반시 제재수단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안 제24조의3 신설 및 제32조·제45조 등)하도록 규정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2021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